#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설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71

발의연월일: 2021. 2. 24.

발 의 자:설 훈·김민철·이규민

김홍걸 • 박영순 • 전혜숙

윤재갑 · 정청래 · 오영환

박 정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현재 720만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업무가 외교부, 법무부, 교육부, 문화체육관광부, 고용노동부, 국가보훈처, 병무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,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집행과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.

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과 재외동포들의 요구 등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·종 합적으로 수립·시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함.

이에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여, 재외동포 관련 정책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이익 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·종합적인 수립·시행을 위해 외교부 장관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,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,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,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함(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.
- ④ 재외동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,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,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 으로 보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률의 폐지) 재외동포재단법을 폐지한다.

제3조(재외동포재단의 해산에 관한 경과조치) ① 「재외동포재단법」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「민법」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.

② 재외동포재단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.

제4조(재외동포재단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재외동

포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행위는 그 업무의 범위 안에서 재외동포청의 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행위로 본 다.

- 제5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「재외동포재단법」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「재외동포재단법」에 따른다.
- 제6조(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특례) ① 재외동포청 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 중 재외동포청 근무 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제2항에 준 하여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경력경쟁채용에 있어서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제2 항제3호에서 규정한 임용예정 직급·직위에 상응하는 소요 근무기간 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재단 직원이 임용되는 공무원의 직급을 정할 때에는 재외동포재단에서의 직위 및 근무경력 등을 공무원 직 급체계와 비교하여 재외동포청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 되, 해당 직무의 내용·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  - ④ 종전의 재외동포재단 직원이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 경쟁채용되어 호봉·수당·경력평정·최저승진소요연수·연가일수 등의 산정을 위한 근무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종전의 재외동포재단에서

재직한 기간을 모두 인정한다.

- ⑤ 그 밖에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경력경쟁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조직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·외교부장관·통일부장관·법무부장관·문화체육관광부장관·고용노동부장관·국가보훈처장 및 병무청장의 소관 사무 중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는 재외동포청장이 승계한다.
  - ② 이 법 시행 당시 교육부·외교부·통일부·법무부·문화체육관광부· 고용노동부·국가보훈처 및 병무청의 소속 공무원 중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.
- 제8조(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·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)이 법 시행 전에 재외동포청장이 승계하는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·외교부장관·통일부장관·법무부장관·문화체육관광부장관·고용노동부장관·국가보훈처장 및 병무청장이 행한 고시·행정처분, 그 밖의 행위와 교육부장관·외교부장관·외교부장관·통일부장관·법무부장관·문화체육관광부장관·고용노동부장관·각기보훈처장 및 병무청장에 대한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는 재외동포청장의 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.
- 제9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재외동포

청장이 승계하는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와 관련하여 "교육부"·"외교부"·"통일부"·"법무부"·"문화체육관광부"·"고용노동부"·"국가보훈처" 및 "병무청"을 인용한 경우에는 "재외동포청"을, "교육부장관"·"외교부장관"·"통일부장관"·"법무부장관"·"문화체육관광부장관"·"고용노동부장관"·"국가보훈처장" 및 "병무청장"을 인용한경우에는 "재외동포청장"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외교부) ①・② (생 략)	제30조(외교부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③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
	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
	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④ 재외동포청에 청장 1명과
	차장 1명을 두되, 청장은 정무
	직으로 하고, 차장은 고위공무
	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
	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.